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703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21년 8월 11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19일

2.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공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의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관련법령

- 법 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사업

-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
-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라. 기관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 규 모 : 22,155 m^2 (약 6,714평)

○ 전경 및 위치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개요

- 「지방재정법」은 동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상기 법령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출연을 의결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임.

나. 출연의 필요성

-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이하 “TBS”)는 1990년 6월 서울시 사업소인 “교통방송”으로 개국하여 30년간 운영 중이었으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2월 17일 서울시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시민을 위한 공공미디어플랫폼 TBS’를 비전으로 삼고 ① 미래 미디어, ② 지역미디어, ③ 시민미디어, ④ 혁신미디어조직을 미션으로 운영 중임.
- TBS는 현재 라디오 채널 FM과 eFM(영어 전문), TV 등 3개의 플랫폼을 주로 운영하며 TBS앱,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TV 등 다양한 IT 플랫폼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다. 출연의 규모 등

- TBS는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2실, 5본부, 29팀으로 조직되어 총원 362명이 근무중임.

2022년도 TBS의 예상 출연금 규모¹⁾는 375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인 13억 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022년 재단 전체 세출예산안 513억 1천2백만원 중 출연금의 비중은 75.8%(자주재원을 24.2%)이며, 2021년 자주재원을 38.8%에 비해 14.6%p 줄어든 것임.

가장 큰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큰 하락(△11억원)도 있었지만, 광고·협찬수입 예산이 2021년도와 달리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편성되면서 7억원이 삭감된 영향²⁾도 있었음.

〈 2022년 TBS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22년(안)	증감	증감
계		51,517,981	51,312,315	-205,666	-0.4%
의존재원	서울시 출연금	37,517,981	38,912,315	1,394,334	3.7%
자체재원	순세계잉여금	3,500,000	2,400,000	-1,100,000	-31.4%
	광고 협찬수입	10,500,000	9,800,000	-700,000	-6.7%
	기타영업외수입	-	200,000	200,000	-

1)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은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출자·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야 함.

2) TBS는 2020년 2월 17일 재단법인화 됨에 따라 광고·협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부가가치세법」 제3조),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고려하지 못했고, 2022년도 예산안에는 2021년 대비 4% 증액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로 인해 편성된 수입의 10%를 제외(109억원×90%)하여 최종적으로는 7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음.

세출예산안의 상세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3%인 21억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비(14억9천9백만원 증액) 및 예비비(3억 9천5백만원 증액)는 증가하였음.

〈 2022년 TBS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편성본부	세부사업	'21년	'22년(안)	증감	증감률
합계		51,517,981	51,312,315	-205,666	-0.4%
사업비 계		20,366,665	18,266,665	-2,100,000	-10.3%
전략 기획실	소계	2,519,190	2,004,340	-514,850	-20.4%
	미디어 정책 기획 및 대외협력	82,660	101,580	18,920	22.9%
	콘텐츠 편성 및 평가	1,558,500	979,000	-579,500	-37.2%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409,250	450,770	41,520	10.1%
	매체 홍보 및 시민협력 추진	228,120	217,900	-10,220	-4.5%
	방송자료 관리	240,660	255,090	14,430	6.0%
라디오 제작본부	소계	6,255,744	5,505,056	-750,688	-12.0%
	FM 방송제작 및 운영	3,946,364	3,472,801	-473,563	-12.0%
	eFM 방송제작 및 운영	2,309,380	2,032,255	-277,125	-12.0%
TV 제작본부	소계	3,705,946	3,229,890	-476,056	-12.8%
	TV 방송제작 및 운영	3,705,946	3,229,890	-476,056	-12.8%
보도본부	소계	1,235,483	1,087,225	-148,258	-12.0%
	보도방송 제작	1,208,338	1,072,825	-135,513	-11.2%
	재난정보 운영관리	27,145	14,400	-12,745	-47.0%
방송기술 본부	소계	3,579,245	3,429,129	-150,116	-4.2%
	송신소 유지관리	495,000	489,000	-6,000	-1.2%
	방송장비 유지관리	1,654,162	1,377,526	-276,636	-16.7%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430,083	1,562,603	132,520	9.3%
경영지원 본부	소계	3,071,057	3,011,025	-60,032	-2.0%
	청사유지관리	2,492,602	2,566,320	73,718	3.0%
	광고 유치 추진	578,455	444,705	-133,750	-23.1%
행정운영비 계		31,051,316	32,550,265	1,498,949	4.8%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	25,927,051	27,426,000	1,498,949	5.8%
	기본경비	5,124,265	5,124,265	-	0.0%
예비비		100,000	495,385	395,385	395.4%

TBS 전체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0.4%인 2억 6백만원이 삭감된 513억 1천2백만원으로 크나큰 변동은 없으나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의 상승으로 사업비의 삭감된 것임.

라. 2022년 주요 현안

□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 방안 마련

TBS는 우리 위원회로부터 재단화 추진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기된 서울시로부터의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 방안 마련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음.

< 재단설립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의결 내용 >

(19.12.26.)

< 변경허가 조건 >

-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허가사항(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허가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심사 받을 것

< 권고사항 >

-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 재정운영심의위원회 기구를 설치할 것

TBS는 2022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2021년 대비 3.7%인 13억 9천4백만원이 증액된 389억 1천2백만원의 출연금이 편성될 예정인데, 광고·협찬수입의 감소로 인해 TBS 전체 세출예산 및 사업비는 오히려 삭감되었음.

우리 위원회는 TBS의 FM 상업광고 허용을 통한 광고 매출액 확대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재단에 요구해 온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상업광고가 가능한 eFM과 TV 방송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 상승, 제작비 증가, 출연료 증액 등 예산 소요가 부분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지금처럼 FM에 대한 상업광고가 계속적으로 불허되면 출연금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지속해서 높아질 수 있고, 방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함³⁾.

-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은 평가계획과 결과, 성과급 지급률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TBS는 방송 재허가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에도 FM방송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을 득하지 못했으며,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평가의 활용) ① 시장이 제16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률 등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년도 경영실적 결과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마쳐진 적도 없을 뿐더러 별도의 보고 안건으로 제출된 적도 전무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